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86
------------	-------

발의연월일 : 2018. 11. 9.

발 의 자 : 손금주 · 김종회 · 박완주

경대수 · 김현권 · 김정재

이개호 · 이만희 · 김영춘

송영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가치 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계해주는 벤처·창업 지원기관에 대해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설정임.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을 포함,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과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제7호 신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 ② (생 략)</p> <p>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7. (생 략)</p> <p>8. (생 략)</p>	<p>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u></p> <p><u>8. (현행 제7호와 같음)</u></p> <p><u>9. (현행 제8호와 같음)</u></p>